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를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보다 주거기능의 연면적 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개편되면서 주거기능의 연면적 비율이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현행 특례보다 완화됨에 따라, 해당 특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

대통령령 제 호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)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서 근로자 의 주거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 력 제고를 위해 주거기능을 계 획할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기능비율에도 불구하고 구 역 내 가용 총연면적(총면적 중 국토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) 중 주거기능 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비율을 1 00분의 30(특별시·광역시·특 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1 00분의 40)까지 계획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 대산업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주 택 총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이 되어야 한다.	<삭 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842